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준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  
발 의 자: 서준오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성준, 김영철, 민병주,  
박승진, 송도호, 왕정순,  
이상훈, 이영실, 이용균,  
정준호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학교 학부모회 운영 시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부모회의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8조(임원의 임기)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8조(임원의 임기) ② ----- ----- ----. <u>다만, 학부모회의 회장 입 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자 도 회장이 될 수 있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운영 시 각급 학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중임 제한자도 회장이 될 수 있게 하고자 제8조(임원의 임기)제2항의 단서를 신설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

추계분석관      김    진   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